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14
----------	-------

발의연월일 : 2026. 8. 10.

발 의 자 : 양부남 · 이훈기 · 이상식
이광희 · 전진숙 · 민병덕
윤준병 · 박정현 · 이해식
모경종 · 임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을 통합하여 광역 행정의 효율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호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런데 통합을 진행하면서 광주의 5개 자치구(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와 전남의 5개 시(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및 17개 군(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은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법률안이 통과되었음. 하지만 타 법률에 따른 시·군과 자치구의 자치권과 재정권의 차이로 인해 5개 자치구의 주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5개의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자치권과 재정권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 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를 “군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군·구 등에”를 “군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구를”을 “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구의”를 각각 “군의”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광산시 등 설치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를 폐지한다.

② 통합특별시에 광산시,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광산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통합특별시 광산구 일원
동광주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통합특별시 동구 일원
서광주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통합특별시 서구 일원
남광주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통합특별시 남구 일원
북광주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통합특별시 북구 일원

③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2항에 따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④ 그 밖에 광산시,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주시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제2항 중 “군·구의”를 각각 “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군·구가”를 “군이”로, “군·구로”를 “군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군·구의”를 “군의”로 한다.

제11조제8항 중 “적용하고 통합특별시의”를 “적용하고(광산시,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및 북광주시에 대하여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및 북구가 폐지되기 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을, 폐지된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4항을 각각 적용한다) 통합특별시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자치구는”을 “광산시,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및 북광주시는”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를 “군수에게”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구의”를 “군의”로, “군·구에”를 “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군·구로”를 “군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군·구의”를 “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군·구로”를 “군으로”로, “군·구의”를 “군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군수·구청장과”를 “군수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구청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군·구의”를 각각 “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구청장의”를 “군수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구청장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군수·구청장에게”를 “군수에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군수·구청장에게”를 “군수에게”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군·구의”를 “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구청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군·구를”을 “군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구 간”을 “군 간”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구 단위의”를 “군 단위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군수·구청장을”을 “군수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군수·구청장과의”를 “군수와의”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군수·구청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 “군수·구청장에게”를 “군수에게”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군수·구청장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구청장이”를 “군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군·구가”를 “군이”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군수·구청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군수·구청장이”를 각각 “군수가”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 “군수·구청장이”를 “군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구청장이”를 “군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군수·구청장이”를 “군수가”로, “군·구의”를 “군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군수·구청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178조제1항 중 “군·구 및”을 “군 및”으로 한다.

제196조제1항 전단 중 “군수·구청장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구청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201조제1항 후단 중 “군·구에”를 “군에”로 한다.

제217조의 제목 중 “군·구 특성화산업의”를 “군 특성화산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구별로”를 “군별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구별”을 “군별”로 한다.

제277조제2항 중 “군수·구청장 및”을 “군수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구청장 및”을 “군수 및”으로 한다.

제279조제2항 중 “군수·구청장”으로”를 “군수”로”로 한다.

제294조제1항 후단 중 “군수·구청장과”를 “군수와”로 한다.

제311조제2항 중 “군·구의”를 “군의”로 한다.

제326조 중 “군·구의”를 “군의”로 한다.

제333조제1항 중 “군수·구청장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구청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347조제3항 중 “군·구에”를 “군에”로 한다.

제380조제6항 중 “군·구는”을 “군은”으로 한다.

제381조제3항 중 “군수·구청장,”을 “군수,”로 한다.

제385조제4항 전단 중 “군수·구청장에게”를 “군수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군수·구청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산시 등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이하 “광산구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동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광산시,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주시(이하 “광산시등”이라 한다)의 동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광산구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광산시등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광산구등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광산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광산구등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광산시등의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광산구등의 조례·규칙은 광산시등의 조례·규

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규칙 중 광산구등의 명칭은 광산시등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광산구등의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광산시등의 시장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광산구등의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광산시등의 지방의회의원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이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광산구등의 의원정수를 광산시등의 의원정수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산구등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광산시등의 해당 지역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광역생활권”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 <u>군</u> , 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생활 범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 <u>군</u> ----- <u>에</u> ----- ----- ----- ----- -----.
제9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 <u>군</u> ·구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는 그 관할구역에 시· <u>군</u> ·구를 둘 수 있다.	제9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 <u>군</u> 등에 관한 특례) ① ----- ----- <u>군을</u> ----- -----.
②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 <u>군</u> ·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시의 시· <u>군</u> ·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	② ----- ----- <u>군의</u> ----- ----- ----- ----- ----- <u>군의</u> ----- -----.
③ (생략) <u><신설></u>	③ (현행과 같음) <u>제9조의2(광산시 등 설치의 특례)</u>

제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지위 및 권
한 특례) ① (생 략)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또는 재
원을 이양받은 경우 시·군·
구의 자치권 및 행정기능 강화

① 통합특별시의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를 폐지한다.

② 통합특별시에 광산시, 동광
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
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광산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통합특별시 광산구 일원
동광주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통합특별시 동구 일원
서광주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통합특별시 서구 일원
남광주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통합특별시 남구 일원
북광주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통합특별시 북구 일원

③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2
항에 따른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한다.

④ 그 밖에 광산시,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주시
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의 지위 및 권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군의

를 위하여 권한·사무·재정의
배분 및 지원에 대한 이양계획
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시·
군 간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중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의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대·조정하는
방안

2.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권,
과세권 및 조직 운영의 자율
성 강화 방안

④ 통합특별시의 사무는 주민
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을 위하여 시·군·구가 우선
적으로 처리하도록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특별
시장은 광역행정 수요 대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특

-----.

<삭 제>

④ -----

-----군이-----

별시의 권한과 사무를 시·군
· 구로 포괄적으로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양된 사무
에 관하여는 해당 시·군·구
의 장을 관계 법령에 따른 주
무관청으로 본다.

제11조(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
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 ⑦ (생략)

⑧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세목
은 종전의 전라남도과 그 관할
구역의 시·군 및 광주광역시
와 그 관할구역의 자치구에 적
용되던 「지방세기본법」 제8
조를 적용하고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
세관계법을 적용한다.

-----군
으로-----
-----.

⑤ -----
-----군의-----
-----.

제11조(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
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적용하고(광산시, 동
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및
북광주시에 대하여는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광산구, 동구, 서
구, 남구 및 북구가 폐지되기
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을, 폐지된 이후에는 「지
방세기본법」 제8조제4항을 각
각 적용한다) 통합특별시의-----
-----.

⑨ 통합특별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자치구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보통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세목을 재원으로 하고, 시·군은 종전의 전라남도 보통세 세목을 재원으로 한다.

⑩ (생략)

제16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 ② (생략)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이양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자치분권의

⑨ -----
-----광산시,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및 북광주시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군수에게-----

-----.

제17조(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① -----

실현과 시·군·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사무 배분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군·구에 이양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시·군·구로 이양할 사무를 발굴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전남광주자치분권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와 시·군·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군·구로 이양하기로 결정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해당 사무를 통합특별시의 사무

-----군의-----

-----군에-----.

1. ~ 4. (현행과 같음)

② -----군으로-----

군의-----

③ (현행과 같음)

④ -----

-----군으로-----

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통합특별시 소속 시·군·구의 사무로 규정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2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광역생활권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공동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군의-----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군수와-----

-----.

③ -----
-----군수가-----

-----.

제23조(광역생활권 지정) ① ---

-----군의-----

-----군의-----

-----.

②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 내 시장·<u>군수·구청장</u>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장·<u>군수·구청장</u>은 통합특별시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u>군수·구청장</u>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4조(광역생활권의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 내 시장·<u>군수·구청장</u>에게 광역생활권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44조(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① (생략)	② ----- ----- -----<u>군수의</u>----- ----- -----. ③ ----- -----<u>군수는</u>----- ----- -----. ④ ----- ----- -----<u>군수에게</u>----- -----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광역생활권의 운영) ① ----- ----- -----<u>군수에게</u>-----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

② 사무국의 구성, 인력 운영 및 사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4조(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와 시·군·구 간 경비 부담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7조(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략)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시·군·구 단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② -----

----군의-----.

③ -----군수는-----

-----.

제54조(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군을-----

-----.

③ -----

-----군 간-----

--.

제77조(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군 단위의-----

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지역 교육·산업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교육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 교육장은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력이 필요한 교육 정책에 관하여 지역교육발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⑥ · ⑦ (생략)

제80조(농어촌학교·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조례) ① (생략)

②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유치, 생

-----.

1. ~ 3. (현행과 같음)

④ -----

-----군수

-----.

⑤ -----군수와의-----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80조(농어촌학교·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조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군수는-----

활·돌봄 환경 개선 및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③ · ④ (생략)

제108조(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
한 공급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이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
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
우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임대주
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
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11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통
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보호
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를 건의할 수 있다.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8조(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
한 공급 특례) ① (현행과 같
음)

② -----

--군수에게-----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

군수는-----

-----.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건의한 사항
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통
합특별시 및 시 · 군 · 구가 설
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생략)

④ · ⑤ (생략)

제115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
공 등) ① (생략)

②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
장 · 군수 · 구청장은 국방부장
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② -----

--군수가-----

-----.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
-----군이-----

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5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
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군수는-----

다.

제116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
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
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
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생 략)

2.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이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
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
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

--.

제116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
법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군수가-----

-----.

-----.

3. -----
----군수가-----

4. -----

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제117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

---군수가-----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7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군수
가-----

② -----군수가-----

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통합특별시 또는 관할시·군·구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위생·방화 등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제178조(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탄소중립도시 사

-----.

③ (현행과 같음)

④ -----
----군수가-----

----군의-----
-----.

⑤ -----군수가-----

제178조(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

업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 및 탄소중립도시
내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6조(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① 통합 특별시장 또는 산업단지 소재 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하여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등을 말한다) 안의 부지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입주업종 제한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경기초시설을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본다.

② 통합특별시장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

— 군 밋 —

②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② -----
-----군수는-----

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1조(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 해제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산업기능 유지, 일자리 감소 최소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련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군·구에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17조(시·군·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의 시·군·구

-----.

제201조(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① -----

-----.

---군에-----

② (현행과 같음)

제217조(시·군 특성화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
-----군별로

별로 지역 여건과 산업 기반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성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군·구별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지원방식, 성과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277조(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① (생략)

②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및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촉진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

② -----

-----군별-----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77조(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군수 및-----

-----.

③ -----

-----군수 및-----

· 군수 ·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절
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한다.

② (생 략)

제311조(농업·농촌 발전기금 설
치·운용) ① (생 략)

② 농업·농촌 발전기금의 재
원 및 용도와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되, 시·군·구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조정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
다.

제326조(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 지방의료원 중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
조제2항·제3항에 따라 보건복
지부에서 지정·고시한 응급의
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
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
원할 수 있다.

--군수와-----

② (현행과 같음)

제311조(농업·농촌 발전기금 설
치·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군의-----

제326조(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 -----

-----군의-----

제333조(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경찰관서, 교육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47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 ② (생략)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80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제333조(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군수
는-----

 -----.

② -----군수
는-----

 -----.

③ (현행과 같음)

제347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군
에-----.

④ (현행과 같음)

제380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① ~ ⑤ (생략)

⑥ 국가와 통합특별시 및 시·
군·구는 진흥지구에서의 난개
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
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
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
며,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
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 ⑩ (생략)

제381조(진흥지구개발계획) ① ·

② (생략)

③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개
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85조(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
립 및 승인) ① ~ ③ (생략)

④ 통합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
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군은-----

-----.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381조(진흥지구개발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군수,-----

-----.

제385조(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
립 및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군
수에게-----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 · <u>군수</u> · <u>구청장</u>은 그 내용을 1 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 ----- --<u>군수</u>는----- ----- -----. ⑤ (현행과 같음)
--	--